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와 저작권

韓勝憲

한국저작권연구소장·변호사

예전엔 하드웨어의 부속물쯤으로 여겼던 소프트웨어가 어느새 독립된 상품가치를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하드웨어의 비중을 훨씬 능가하기에 이르렀다. 과연 컴퓨터 프로그램은 현대와 같은 고도정보사회의 총아임에 틀림없다. 이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는 그 법적 보호를 위해서 모델조항과 협정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1978)

미국은 1980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물로서 보호한다는 명문을 마련했으며, 일본은 1985년에야 그러한 보호입법을 단행(저작권법의 개정)하여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입법론으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규정을 저작권법에 흡수할 것인지, 별개의 특별법으로 법제화할 것인지를 놓고 양론이 있으며, 제각기 장단점이 있으나 컴퓨터의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 특별법을 두지 않고 저작권법 속에 그 보호조항을 포함시켜 놓았다.

우리나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의규정(저작권법 제2조 12호)과 저작물로서의 예시조항(위 법 제4조 제1항 9호)만 저작권법에 두고, 그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특별법에 위임하는(위 법 제4조 제2항) 기형적인 방식을 택하였다.

이것은 앞서 말한 두 입법체제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라기보다는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한 한미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1986년 7월에 성립된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한미간의 양해각서에 "컴퓨터 프로그램은 새 저작권법과 동시에 발표되는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

외국인의 컴퓨터 프로그램은 세계저작권조약의 불소급원칙에 따라 87년 10월 1일 이전의 것은 보호해 줄 의무가 없다. 다만 미국의 소프트웨어 중 87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5년내에 나온 것은 한국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그 무단복제·배포를 방지하도록 미국과 합의한 바 있어, 앞으로 적지 않은 문제가 파생될 것이 예상된다.

한다"는 대목이 들어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저작권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위 법 제2조 12호). 달리 풀이하자면, 컴퓨터라고 하는 정밀한 하드웨어를 그 기능에 따라 작동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일컫는다.

위와 같은 정의는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1호에서도 반복되고 있으나, 그러한 정의에 들어맞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모두 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라고 볼 만한 창작물이라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정의규정에서 말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라 함은 앞서 말한 WIPO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에 관한 모델 조항의 'machine having information-processing capabilities'에서 연유한 용어로서, 보통 입력장치, 중앙처리장치, 출력장치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언어, 규약, 解法에는 위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 제1항)

'프로그램언어'라 함은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 기호 및 그 체계를 말

한다.(같은 조 제2항 1호) 따라서 기존의 프로그램언어 이외에 새로운 언어체계를 고안하더라도 그것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규약'이라 함은 특정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프로그램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을 말한다.(같은 항 2호) 그리고 '해법'은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지시·명령의 조합방법을 말한다.(같은 항 3호) 위와 같은 정의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아직도 생소하고 난해한 것이 사실이다.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등록 따위의 절차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창작과 동시에 당연히 발생한다.(제8조 제2항) 그리고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50년간 저작권이 존속한다.(같은 조 제3항)

직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를 결정하는 요건은 저작권법상의 단체명의 저작물의 경우와 아주 흡사하다. 즉 "국가, 법인, 단체 그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은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본다".(제7조)

이 조문대로 하자면, 직무상 창작된 프로그램이 만일 공표되지 않거나 개인 명의로 공표

된 경우에는 법인 등의 저작물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본시 컴퓨터 프로그램은 회사와 같은 조직체에서 여러 프로그래머가 참여하여 회사를 위해서 제작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법의 규정은 좀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다는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프로그램의 변경이 다른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또는 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자인격권 중의 동일성유지권에 저촉되지 아니한다.(제11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사용하는 자는 그 멸실·훼손·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그러나 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복제 뿐 아니라(비록 명문은 없지만), 복제물의 소유자가 자신이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제나 변안까지도 자유로 할 수 있다고 넓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미국저작권법 제117조 제1항, 일본저작권법 제47조의 2 참조)

외국인의 컴퓨터 프로그램은 세계저작권조약(UCC)의 불소급원칙에 따라 1987년 10월 1일 전에 나온 것은 보호해 줄 의무가 없다. 다만 미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중 1987년 7월 1일부터 逆算하여 5년 이내에 나온 것은 한국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하여 그 무단복제나 배포를 방지하도록 미국과 합의하였다. 말하자면 5년간 소급보호를 약속한 셈인데, 앞으로 적지않은 문제가 파생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찾습니다

현 직장에 그대로 재직하면서 새로운 일감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좀더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출판편집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2년이상 되고 타회사의 새로운 일들을 추가로 맡아 해나갈 여력이 있는 남녀 Idea Person을 아래와 같이 찾습니다.

■ 모집분야—Editorial/Book-cover Design · Page Layout · Illust · 광고기획 · Logo 제작 · 사보편집 · 대지 및 수정작업

■ 응모요령—이력서와 자기소개서 1통을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면접일자를 통보해 드립니다. 작품카피와 작품소개도 첨부 바랍니다.

능률영어사부설

한국출판서비스센터
Korea Book Publishing Services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51-1 근심빌딩 402호 ☎ 701-4756, 4757

알기쉽게 펼쳐진 道의 철학

道란 무엇인가?

레이몬드·스물리안/조성을 옮김

동양사상의 정수를 누구나 알기쉽게 서술한 재미있는 책!
값 3,000원

東國出版社 ☎ 738-4665

10년 동안 꾸준히 철학책만 출판해온 서광사의 철학 입문서들

- 철학과의 만남
B. 브로디 지음/이병욱 옮김/304면/3,500원
 - 철학은 이렇게 한다
J. 로젠버그 지음/이재훈 옮김/224면/3,000원
 - 철학의 단계적 이해
M. 그리나 지음/송영진 옮김/392면/5,000원
 - 철학의 흐름과 문제들
N. 하르트만 지음/강성위 옮김/272면/3,500원
 - 중세철학사
F. 코플스톤 지음/박영도 옮김/*'88년 3월말 발행예정
 - 프랑스 철학사
A. 로비네 지음/류종렬 옮김/160면/2,000원
- * 서광사는 이 밖에도 입문서, 논리학, 윤리학, 미학 등 철학의 모든 분야의 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철학서적 서광사 서울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전문출판 전화 924-6161 ~ 5